

<의안번호 제2007-34호>

거창군 삶의 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07. 9. 21.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 2007. 9. 27.

2. 제정이유

우리 군의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폭넓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거창군 삶의 쉼터 “노인·여성·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명칭 : 거창군 삶의 쉼터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
- 나. 주요시설(안 제4조).
 - 노인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별 주요시설 규정

다. 주요사업내용(안 제5조)

-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 상담, 노인교육, 노인복지증진 사업 등
- 여성복지사업 : 여성문제 상담, 취미·소양교육, 여성복지증진 사업 등
-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상담, 재활치료, 장애인복지증진 사업 등

라. 운영(안 제6조).

- 군수가 직접 운영 또는 필요시 위탁운영 가능
⇒ 위탁운영계약시 기간 : 3년 이내, 재위탁 가능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가능

마. 기구 및 인원(안 제7조).

-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성
- 위·수탁의 경우 관장 및 사무국장 임명은 사전에 군수 승인

바. 시설의 사용료(안 제8조)

-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사. 수탁자의 의무(안 제9조)

- 수탁 시설의 선량한 관리 등 의무 명시

아. 위탁의 정지 및 취소(안 제10조)

- 수탁자 의무 위반, 협약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받은 경우,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 발생 등
- 수탁자 책임으로 정지 및 취소시 시설 운영에 사용한 모든 비품은 거창군으로 귀속

자. 손해배상(안 제11조)

- 시설 및 비품 훼손 또는 망실시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차. 준용(안 제12조)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여성발전기본법,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 준용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22조, 23조
- 노인복지법 제37조·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9조·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7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 및 제6조

나. 예산사항 : 2008년도 예산에 반영 계획

다. 입법예고(2007. 8. 28. ~ 9. 16.)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노인·여성·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거창읍 송정리 941-1번지에 2003년부터 2007년 말 완공예정으로 건립중인 노인·여성·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 그러나 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는데, 군 직접 운영 시와 위탁운영 시의 인력 수급계획, 예산의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1) 조례안 제6조(운영)제3항의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하는 규정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시설의 위탁)제2항의 규정에서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추어 위탁기간을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2) 조례안 제7조(기구 및 인원)제1항의 규정에서 노인복지회관 및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기구 및 인원에 대한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는 기구 및 인원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기구, 인력수급계획, 소요예산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구 및 인원을 구성하되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규정한 사항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장 및 사무국장의 임명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을 벗어난 행정규제이므로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4) 조례안 제8조(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제1항에서 “사용료는 규칙에서 정한다” 라고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제1항에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수수료의 결정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이므로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경상남도, 창원시, 서울특별시에서 사용료 등을 규칙으로 규정한 사례도 있음.

- ①경상남도학사 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제19조(부담금)
- ②창원시 알뜰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6조(사용료)
- ③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제9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등)

- (5) 조례안 제10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제1항의 규정은 수탁자가 의무 등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 위탁계약은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므로 제3호에서 “위탁운영” 이라고 규정한 용어는 “수탁운영” 으로 수정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이밖에 기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1999.4.30> ③삭제<1999.4.3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퇴소의 기준·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4.30, 2003.7.30>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7.30>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3.7.30>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시설의 설치·운영신고등) ①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2005.6.8, 2005.10.17, 2006.7.3>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1부
2.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 토지나 건물에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1부

3. 삭제 <2006.7.3>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5.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6. 삭제 <2002.12.31>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3>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④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신고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①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1.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한 자

2.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3.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③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사업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3.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2. 장애인, 노인, 모·부자가정 등 취약계층 주민

3. 직업·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4.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⑥사회복지관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⑦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9.6]

제23조 (시설의 위탁) ①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기관이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4.9.6>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7.30>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12.27>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 60세이상의 자
2. 경로당 : 65세이상의 자
3. 노인휴양소 : 60세이상의 자 및 그와 동행하는 자. 다만, 이용인원이 정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그 외의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인복지회관 및 노인교실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은 시설별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여성발전 기본법]

제33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능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거나 여성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4조의3(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남녀평등교육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제4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신고·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4조 (비용의 부담) ①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제1항, 법 제34조제1항, 법 제39조제1항, 법 제44조제1항, 법 제45조제1항·제2항, 법 제57조제1항 및 법 제5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제36조 (비용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중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평가의 결과등 당해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제140조를 준용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임·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의 일부(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를 그 보조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6조 (지휘·감독) 위임기관 및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위임기관 또는 위탁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한시적인 사전승인이나 협의의 요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위원회) ① 수탁기관을 심사 선정하기 위하여 거창군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직원 및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수탁기관 심사·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군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